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9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3. 8.(월)	담당부서	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TF
담당과장	이재석 팀장(044-203-5894)	담 당 자	조동후 사무관(044-203-5894)

「포항지진피해구제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, 국무회의 의결

- 3.15일 공포 및 4.16일 시행 예정, 시행령 개정안 3.9일부터 입법예고 -
-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포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「**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**」 **일부개정법률공포안**이 3월 9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개정 법률안은 **3월 15일 공포** 후, **4월 16일***부터 **시행**될 예정이다.

* 단, 소멸시효 특례 조항(제34조의2)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

○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**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**을 위해 **제정**('19.12.31. 공포, '20.4.1. 시행)되었으며,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,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**정부**와 **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**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

❶ **(재원 분담)**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**피해구제지원금 재원**을 **부담**하며, **부담비율**은 **시행령**으로 규정

❷ **(재심의 규정)** 피해구제 결정에 **이의 있으면** 통지일로부터 **30일內** 재심의 신청

❸ **(소멸시효 특례)**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**손해·가해자를 안 날**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**5년**으로 규정

○ **피해구제 신청**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(신청일~결정통지일)

□ 한편,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이날 **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**하였다. (입법예고 기간 : 3.9일 ~ 4.1일)

*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, 산업부 홈페이지(motie.go.kr) 통해 확인가능

○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,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**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**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주요내용 >

❶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(안 제12조의2)

○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**국가 100분의 80, 관계 지자체 100분의 20**으로 함

❷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 (안 제15조의2, 제16조)

○ (**신청**) **재심의 신청서**(별지 제5호서식)에 신청사유를 **증명**할 수 있는 **자료**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

○ (**결정·송달**)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**결정서**를 작성하고, **지체없이** 신청인에게 **송달**

○ (**지급**) 재심의 결정에 따라 **추가로 지급**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**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**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

❸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 (별표2)

○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**재산피해**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**지원비율**을 **'피해금액의 100분의 80'**에서 **'피해금액 전부'**로 조정

□ 이와 함께,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('20.9월 접수 개시)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**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**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○ 관련 **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**하고, 경상북도·포항시와 협의하여,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**행정절차**를 **빈틈없이 준비**하고 있다.

* '21년 피해구제지원금 예산 : 국비 3,000억원, 지방비 166억원(584억원 추가 편성 예정)

○ 아울러, 정부는 **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,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,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** 등 **포항시의 경제 활성화**를 위한 각종 **지원사업**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“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,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, **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**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【붙 임】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문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 조동후 사무관(☎ 044-203-58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포항지진피해구제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문**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- 174호
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1. 2.26. 국회 의결, 2021. 3.15. 공포 예정)됨에 따라,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(안 제12조의2)

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,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

나.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(안 제15조의2, 제16조)

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,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,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

다.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(별표 2)

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‘피해금액의 100분의 80’에서 ‘피해금액’으로 조정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

- 전자우편 : mprior22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8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(전화 044-203-5894, 팩스 044-203-47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